

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이은주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	1100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10월 16일

발 의 자 : 이은주 의원 (1명)

찬 성 자 : 김태호, 김상훈, 송아량, 이병도,
오한아, 김화숙, 이승미, 정진철,
송도호, 조상호, 이영실 의원 (11명)

1. 제안이유

○ 작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 이후 지역별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차이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에 이에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공개하라는 권고에 따름

○ 지역별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자동차번호판 발행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해 지역별, 자치단체별 차이가 없도록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가. 시장은 등록번호판 발급·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의 마련하여 지정 고시하여야 한다.

(안 제8조의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자동차관리법」 및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) ① 시장은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지정·고시하여야 한다.

② 대행자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적정한 번호판 종류별 수수료를 산출하여야 한다.

③ 대행자는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산출근거 및 산출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시장은 그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부적정한 경우 대행자에게 재산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<u>제8조의2(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)</u> ① 시장은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지정·고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<u>대행자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적정한 번호판 종류별 수수료를 산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대행자는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산출근거 및 산출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시장은 그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부적정한 경우 대행자에게 재산출을 요청할 수 있다.</u></p>